

2024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실무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세무사 조희래

I. 대손상각비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키 포인트

1.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경우 2년이상 경과했을 경우 법인세법(소득세법) 상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

이 경우 외상매출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전액이 외상매출채권이므로 별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전액을 대손상각 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법상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2년이상 회수가 안되어 대손처리하는 채권에 해당한다 하여도 대손세액공제는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관련 법규정이 2020년도 신설규정으로 2020년 해당 규정 신설 이전 이미 2년이상 회수기한이 경과한 채권의 경우 2년이 경과한 날로 소급하여 해당 일의 확정신고기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정청구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법규정의 해석오류로 판단됨.

2020년 이전에는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

문에 오히려 요건 충족의 기준 규정 자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법인세법 그리고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는 외상매출채권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이상 경과한 채권의 경우 사
업장 기준으로 회수불능을 판단하여 대손상각 판단시점에 손금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손세액공제 역시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상 대손상각한 사업연도의 확정신고 기한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만, 상법, 민법, 어음법 등 타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가 신고조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유발생한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산입하여
야 하며, 이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EX) 2021년 6월 28일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이 있을 경우

- 1) 2024년 6월 26일 대손상각 결정 한다면,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으로서 2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상각 가능하며,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2) 2024년 10월 31일 대손상각 결정 한다면,
중소기업 외상매출 채권으로서 2년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대손상각 가능하며,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됨.
(상법 및 민법상 일반적인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2024년 6월 27일부로 소멸
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신고조정 사유로 변경되기 때문)

3) 2025년 12월 31일 대손상각 결정 한다면,
상법 및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대손상각은 2024년도 손금산입 대상으로
경정청구 대상이며, 대손세액공제는 20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분으로 경정청구 가능.

주의! 타법률상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발생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닌 채권회수절차를
중단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한다면 소멸시효는 완성
되지 않습니다.

II. 퇴직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지급금액을 법인이 승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사업포괄양수도가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함.

즉,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사업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퇴직금의 승계는 불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에서 모두 퇴직금 지급 및 비용처리 하여야 함.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퇴직금(추계액)을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법인은 퇴직금추계액으로 부채로 승계하며, 개인사업자는 해당 퇴직금을 당기비용처리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법인의 경우 승계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추 후 지급시 충당부채 상계항목으로 비용처리 되지 아니하며 법인 입사 후 발생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는 비용처리 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 가입시 법인근속연수 뿐만 아니라 기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급여 추가 부담액이 발생되어 손실이 커질수 있으므로 부채 승계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임.

이에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예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기발생된 퇴직금은 5천만원이며, 직원은 모두 3명으로 근속연수는 평균 5년이였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여 법인에서 퇴직금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개인사업자

차) 퇴직급여 5천만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5천만원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하며, 원천징수 의무는 없다.

법인사업자

차) 영업권 등 5천만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5천만원

영업권에 대해서는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 진행 함.

3년 후 해당 직원 3명 전원이 퇴사하였으며,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직전 3년 월 평균 급여는 4백만원이며, 근속연수 총 8년으로 $3.2\text{천만원} \times 3 = 9.6\text{천만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 가입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천만원
 퇴직급여 4.6천만원

대) 현금,예금 9.6백만원

비용처리는 4.6천만원이 됨

확정기여형 법인전환 후 바로 가입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5천만원

대) 현금,예금 5천만원

차) 퇴직급여 3.6천만원

대) 현금,예금 3.6천만원

총 비용은 3.6천만원으로 실 부담금액이 감소함.

2.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세무조정

확정급여형은 신고조정사항으로 실제 불입한 연도에 퇴직금추계액을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 (-유보) 하며, 신고조정 누락한 경우 다음연도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 다만, 실 불입한 연도의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예시) 첫째 퇴직연금(DB) 총 2천만원 불입하였으나, 당해연도 퇴직급여추계액은 1천만원일 경우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2천만원 대) 현금,예금 2천만원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유보)

다음해 퇴직연금 불입액은 1천만원이며, 퇴직급여 추계액은 1천5백만원일 경우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대) 현금,예금 1천만원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백만원 (-유보)

만약 퇴직급여 추계액이 2천만원일 경우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유보)

만약 퇴직급여 추계액이 3천만원일 경우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유보)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유보) --->

첫해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한도 손금산입 가능함.

만약 첫째 신고조정을 통한 손금산입액이 없었다 하여도 해당 연도 불입액 중 한도초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었던 금액까지만 당해연도 불입금액이 아니어도 손금산입 가능함.

3. 확정급여형 불입 및 신고조정 중 직원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 비용처리 세무처리 방안.

예시) 확정급여형(DB) 총 불입액은 누적기준 5천만원이며,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만원

대) 예금 등 5천만원

* 퇴직금추계액이 7천만원 일 경우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만원 (-유보)

현재 조정계산서상 손금산입(-유보) 금액이 5천만원 누적 계상되어 있을 것임.

2023년 12월 1일 직원A의 퇴사로 총 퇴직금 3천만원 지급시

1) 회사가 퇴직연금불입액에서 모두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차) 현금 및 예금 3천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3천만원

차) 퇴직급여 3천만원 대) 현금 및 예금 3천만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3천만원 (유보)

2) 회사가 퇴직연금불입액에서 1천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차) 현금 및 예금 1천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대) 퇴직급여 3천만원 대) 현금 및 예금 3천만원

이를 한번에 분개하면,

차) 퇴직급여 3천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현금 및 예금 2천만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천만원 (유보)

3)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액 5천만원 이고 퇴직급여추계액이 3천만원 일 경우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만원

대) 현금 등 5천만원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3천만원 (-유보)

4) 직원A에 대한 퇴직금이 3천만원이고

회사가 퇴직연금 불입액에서 모두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차) 현금 및 예금 3천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3천만원

차) 퇴직급여 3천만원

대) 현금 및 예금 3천만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18백만원 (유보)

결국 비용처리는 $30,000,000\text{원} - 18,000,000\text{원} = 12,000,000\text{원}$ 이 된다.

애초 총 불입 퇴직연금 중 60%를 신고조정에 의해 비용처리 했으므로 실 퇴직금 지급시 연금 인출금액도 동일 비율로 60%는 기 손금산입한 금액의 인출로, 40%는 당해연도 추가 비용으로 보아 적용한다.

5) 직원A에 대한 퇴직금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차) 퇴직급여 3천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원

현금 및 예금 2천만원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6백만원 (유보)

결국 비용처리는 $30,000,000\text{원} - 6,000,000\text{원} = 24,000,000\text{원}$ 이 된다.

만약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액을 인출하지 않고 전액 별도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 전체가 비용처리 된다.

6) 퇴직급여 지급 후 다음연도 말 까지 1년간 추가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액 1천만원이 있고 당해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이 29백만원일 경우를 가정하고, 직전년도까지 총 불입액 5천만원이고 추계액은 3천만원 이었을 때, 직전년도 직원A 퇴사로 1천만원을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재무상태표상 남아있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4천만원, 손금산입 유보 잔액은 24백만원임.

당해연도 추가 불입액 1천만원으로 재무상태표 상 총 퇴직연금운용자산 가액은 5천만원, 퇴직급여추계액 29백만원 이므로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백만원 (-유보)

만약, 추계액이 24백만원 이라면,

세무조정) 없음

7) 당해연도 불입금액 1천만원은 추계액을 한도로 신고조정을 통한 손금산입 가능하나 한도 초과로 인하여 당해 불입금액이 있음에도 손금산입 못하였으므로 차기연도에 불입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계액 한도로 손금산입 할 수 있음.
그러나 불입한 당해연도에 추계액 기준 한도 미달로 신고조정을 통한 손금산입이 가능함에도 신고조정을 통한 비용처리 누락의 경우라면 차기연도 손금산입 할 수 없음.

4. 확정급여형(DB) 가입 사업장이 연금계약 해지 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기 불입 DB형은 총 5천만원이며, DC형 가입 시점 퇴직급여추계액은 5천만원이다.

DB해지 후 DC형으로 일시에 5천만원 불입하였다.)

차) 예금 5천만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만원

차) 퇴직급여 5천만원

대) 예금 5천만원

세무조정)

1) DB형 불입시점에 모두 신고조정을 통한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경우

손금산입 (-유보) 누적액이 퇴직급여추계액 만큼인 5천만원 전체 처리하였다면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5천만원 (유보)

2) DB형 불입시점에 3천만원만 신고조정을 통한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 경우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3천만원 (유보)

결국 이 경우 손익계산서상 5천만원(DC형 불입금액) 비용처리 되지만 세무조정상 기존 DB형 불입금액 기 손금 분 추인하여 3천만원 손금불산입 되므로 세법상 비용은 당기 기준 2천만원이 되는 것임.

3) DB형 불입시점에 별도 신고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이 없음.. 즉,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예금으로 전환되는 것 뿐이며, 이를 일시에 DC형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 전액이 당기 비용에 해당함.

III. 업무용승용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1) 국내 제조업 법인 A사는 2020년 7월1일 업무용승용차(5인승 승용차)를 운용리스 계약하였다. 리스계약 조건은 36개월이며, 보증금과 잔가를 30%로 동일하게 맞추고 보증금 3천만원을 불입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리스료에 포함하지 않는 계약 조건이다.
월 리스료는 2,300,000원이다.
- (2) 2023년 6월 30일부로 운용리스 종료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부로 해당 차량을 승계취득 하였으며, 승계취득시 보증금과 잔가를 동일하게 하였으므로 취득원가는 3천만원이며, 차량등록세를 포함한 이전비용으로 3,000,000원이 지출되었다.
- (3) 2025년 7월 1일 해당 차량을 15,000,000원(VAT별도)에 매각하였다.
- (4) 매년 리스료 및 차량유지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업무용사용비율은 100%이고, 운행일지는 모두 작성하였다.
(차량관련 비용 한도는 감가상각비 8백만원 + 유지비 7백만원 = 15백만원이다.)

1) 2020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연 도	연간 총 리스료(원)	연간 운행비용(원) (보험, 자동차세, 유류비등 포함)
2020.7.1.~12.31.	13,800,000	4,500,000
2021	27,600,000	5,800,000
2022	27,600,000	6,500,000
2023. 12. 31.	13,800,000(리스료), 3,300,000(감가상각비)	6,000,000
2024	6,600,000 (감가상각비)	6,500,000
2025. 06. 30.	3,300,000 (감가상각비)	3,200,000

차) 운용리스료 13,800,000

대) 예금 13,800,000

차) 차량유지비 4,500,000

대) 예금 4,500,000

장부상 당기비용은 총 18,300,000원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운용리스료 한도초과액 9,800,000원 (기.사)

(손금불산입) 차량유지비 1,000,000원 (유보)

2) 2021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운용리스료 27,600,000

대) 예금 27,600,000

차) 차량유지비 5,800,000

대) 예금 5,800,000

장부상 당기비용은 총 33,400,000원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운용리스료 한도초과액 19,600,000원 (기.사)

(손금산입) 차량유지비 1,000,000원 (-유보)

연간 리스료 한도액 8백만원 초과금액은 손금부인되나, 차량유지비는 연간 한도 7백만원 중 당기 부족액 1,200,000원이 있으므로 한도내 과거 손금부인액 추인함.

3) 2022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운용리스료 27,600,000 대) 예금 27,600,000

차) 차량유지비 6,500,000 대) 예금 6,500,000

장부상 당기비용은 총 34,100,000원임.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운용리스료 한도초과액 19,600,000원 (기.사)

4) 2023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023년도는 6월말까지 리스료 13,800,000원이 있으며, 7/1부로 차량을 승계하였다.
승계차량은 차량가격 및 부대비용 합하여 33,000,000원이며, 5년간 정액법 상각하므로
2023년도 감가상각비는 $33,000,000\text{원} \times \frac{1}{5} \times \frac{6}{12} = 3,300,000\text{원}$ 이다.

차) 운용리스료 13,800,000

대) 예금 13,800,000

차) 차량운반구 33,000,000

대) 보증금 30,000,000

예금 3,000,000

차) 차량유지비 6,000,000

대) 예금 6,000,000

차) 감가상각비 3,3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30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운용리스료 한도초과액 49,000,000 (기사)

(손금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49,000,000 (유보)

(손금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9,100,000 (유보)

* 총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한도초과 유보 잔액은 23년말 기준 58,100,000원 임.

5) 2024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감가상각비 6,6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6,600,000

차) 차량유지비 6,500,000

대) 예금 6,50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400,000 (-유보)

* 총 차량 감가상각비 등 한도초과액 유보 잔액은 24년말 기준 56,700,000원 임.

6) 2025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감가상각비 3,3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300,000

차) 차량유지비 3,200,000

대) 예금 3,200,000

차) 예금 16,500,000

대) 차량운반구 33,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3,2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500,000

 처분손실 4,800,000

장부상 25년도 총 비용은 감가상각비 3,300,000원 + 차량유지비 3,200,000원 + 처분손실 4,800,000원 = 11,300,000원 임.

세무조정)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700,000원 (-유보)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6,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차량운반구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52,800,000원 (기.사)

*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은 장부상 처분손실 4,800,000원과 보유 기간동안 감가상각 부인액 총 56,000,000원을 합한 총 처분손실 60,800,000원 중 연간 처분손실 인정한도인 8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사) 처분한 것으로 해당 금액은 연간 8백만원을 한도로 추인한다.

7) 만약, 처분가액이 5천만원(VAT별도) 일 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차) 감가상각비 3,3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300,000

차) 차량유지비 3,200,000

대) 예금 3,200,000

차) 예금 55,000,000

대) 차량운반구 33,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3,2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5,000,000

처분이익 30,20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700,000원 (-유보)

(손금산입)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6,000,000원 (-유보)

(손금불산입) 차량운반구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17,800,000원 (기.사)

장부상 차량가액 잔액은 19,800,000원으로 이를 50,0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장부상 매각에 따른 처분이익이 30,200,000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법상 해당 차량의 가액은 19,800,000원 + 56,000,000원 = 75,800,000원으로 여전히 처분에 따른 손실이 25,800,000원 발생한다.

세법상 연간 처분손실 8백만원씩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처분 당해연도에 8,000,000원의 처분손실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17,800,000원을 처분손실 한도초과로 부인하고 차기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매년 8백만원씩 손금 추인하여 상계한다.